

지역문화융합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지역문화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본 대학 내에 둔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지역이 갖는 문화적,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분야별 학문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
2.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연구기관의 용역
3. 지자체 및 기타 산업체 등이 위탁하는 연구용역
4. 분야별 전문연구소와 영역 간 합동연구를 통한 융,복합 전략연구
5. 지역민과 청소년, 재학생 상대의 양질의 교육 제공
6. 국내외 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용역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및 임원) ① 본 연구소는 인문학 연구분과, 문화관광콘텐츠 연구분과, 영상콘텐츠 연구분과, 음악활동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1. 인문학 연구분과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의 응용 및 연구를 담당한다
2.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분과는 지역 축제 및 각종 국제행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민의 참여를 돕고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정책 자문 및 컨설팅을 담당한다.
3. 영상콘텐츠 연구분과는 각 분야의 학문과 콘텐츠를 ICT 및 미디어를 활용하여 융합하고 디자인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담당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의 용역 및 연구를 담당한다.
4. 음악 활동 연구분과는 음악과 예술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관련 용역을 담당한다.

② 지역문화융합연구소의 직제편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소장
2. 분과위원
3. 전문(객원) 연구위원
4. 보조연구원
5. 간사
6. 사무직원

③ 연구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1명
2. 분과 : 각 연구분과별 1명
3. 전문연구위원 : 1명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분과위원)

① 연구소장은 각 연구 분과위원을 위촉하며, 필요에 의해 증원 및 감원을 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은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 연구위원 및 연구원(전문, 객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의 임용기간은 본 대학 재임기간으로 하고, 연구원(전문, 객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사무직원) 간사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각 연구분과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소 간사가 겸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내규의 제정 및 폐기
3. 연구계약체결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위촉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고

제14조(보고) 연구소장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연구계약체결 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제5장 연구 논문집

제15조(연구논문집 명칭 및 발행) ① 연구소의 논문집 명칭은 “지역문화연구”로 한다.

② 연구논문집은 필요에 따라 발행한다.

제16조(논문의 제출자격) 논문의 제출자격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편
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할 수 있다.

제17조(편집위원회)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제 간행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의 총당) ① 연구소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보조금으로 총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9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는 잔여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시킨다.

제7장 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3. 4.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